

## 6.1.7 슬로문화연구센터운영규정

제정 2009. 11. 10.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초당대학교 슬로문화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근거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직제규정 제25조제2항에 근거한다.

제3조(목적) 본 센터는 슬로문화 구현을 위한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전파하며, 이에 부합하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본부) 본 센터는 초당대학교에 둔다.

제5조(사업)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인간적인 삶의 회복을 위한 ‘느림의 삶’이 갖는 철학적 의미 연구
- ② 슬로문화의 구현을 위한 향토문화, 음식, 생태환경과 관련된 연구사업
- ③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
- ④ 국가, 지자체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으로부터의 위탁과제 수행 및 지원
- ⑤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

### 제2장 조 직

제6조(센터장) 본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의 자격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.

- ① 자격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팀장) 센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팀, 기획팀, 교육팀을 두며, 각 팀에는 팀장을 두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고문 및 자문위원) 센터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9조(연구원) 연구원의 종류 및 위촉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센터에 연구원과 전임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초빙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전임연구원과 초빙연구원은 국내외의 연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10조(운영위원회 구성)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각 호와 같다.

-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- ② 연구 과제의 선정
- ③ 교육, 홍보에 관한 사항
- ④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⑤ 예산 및 결산 심의
- ⑥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회의)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재 정

제13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센터의 재정은 국고 또는 지자체보조금, 학교지원금, 위탁연구비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- ② 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연구비, 수당 및 교육 등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③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.

## 제5장 기 타

제14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